

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계약서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"공단"이라 한다)과 이아이이동서번어학원(이하"소상공인"이라 한다)과 (주)넥소(이하"기업"이라 한다)간
같이 스마트기술(이하 "기술"이라 한다)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계약(이하 "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개요) ① "공단"과 "소상공인"과 "기업"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.

기술명	수량	정부보조금(원)	소상공인부담금	
			공급가액(원)	부가가치세(원)
65인치 전자칠판 [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]	1	2,030,000	870,000	290,000
벽부착형	1			

- ② "기업"이 수행해야 할 세부과업 내용은 스마트상점 사업홈페이지에서 "소상공인"이 선택한 기술내용에 따른다.
③ "소상공인"의 지급보증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.
④ "기업"의 지급보증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.

제2조(기술보급) ① "기업"은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술보급을 완료하여야 한다.

- ② "기업"은 보급된 "기술"에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기술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사후관리 연락망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, "소상공인"은 이를 제거할 수 없다.
③ "소상공인"은 "기술" 보급이 완료되면, 정상작동 확인 후 "기업"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, "소상공인"은 "공단"의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.
④ "기업"과 "소상공인"은 "공단"에서 지정한 정부보조금을 기준으로 각각 "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."
⑤ "공단"이 지정한 날까지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"공단"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3조(계약의 일반조건) ① "소상공인"과 "기업"은 계약조건, "기술" 보급내용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, 사업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야 한다.

- ② 계약내용 및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"소상공인"과 "기업"은 상호 협의하여, 공단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③ "소상공인"과 "기업"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"계약"을 해지할 수 있다.
1. "소상공인"이 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
2. 기술보급 도중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의 의견차이로 더 이상 기술보급이 불가능 할 경우
3. 계약 관련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4.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에서 정한 기술 보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5. 그 외 소상공인 또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계약·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6. 해당 업종에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보급한 경우
7. 기술보급 완료 전 폐업한 경우
8.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④ 위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상태의 손해를 배상한다.

제4조(유지관리의무) ① "소상공인"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"기술"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, "기업"은 "소상공인"이 기술을 2년간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"기업"은 "소상공인"에게 무상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범위를 고지하고, 관련 범위를 규정한 서류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"소상공인"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.
③ 본 계약에 따라 보급된 "기술"은 "소상공인" 임의에 따라 처분, 담보 제공, 이전 등을 할 수 없다. 단, "소상공인"은 불가피한 상황(폐업, 휴업 등)일 경우, 지원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.
④ "소상공인"은 양수자를 직접 찾아야 하며, 양도양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"공단"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⑤ "공단"의 현장 점검 등에서 "기술"이 정상적으로 설치·유지·관리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가 정부보조금을 "공단"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용 및 효력의 발생) ① 본 계약의 체결 및 수행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,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, 상법, 국가계약법 등의 법령을 준용한다.

- ② "계약"의 효력은 "소상공인"과 "기업"이 계약서에 날인 한 후 "공단"의 승인이 통보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6조(보직) ①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"공단"과 "소상공인"과 "기업"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- ② 본 계약내용과 관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제1심 관할 법원은 "공단"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2000년 00월 00일

(공단) 기 관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사업자등록번호
주 소

305-82-21570
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2~3층

이 사 장 : 박성호



(소상공인)

상 점 명
사업자등록번호
주 소

이아이이동서번어학원
503-90-96781
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1 (서변동) 4층

상점대표 : 설재환 (대표자 도장/서명)

(기업)

기술공급기업명
사업자등록번호
주 소

(주)넥소
289-87-00638
인천광역시 서구 보들로 158 블루텍 제조동 527호(오류동)

기업대표 : 박정민 (직인)